# 2026년도 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본 예산 총칙

(2026.01.01. ~ 2026.12.31)

**제1조(총칙)**

① 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2026년도 본 예산서를 편성 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 및 관할 시·구청에 보고한다.

②재원에 따라 보호작업장 예산서를 작성한다.

③ 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2026년도 본 예산 총액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| 세입 | | | | 세출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(A) | 2026년도 본 예산(B) | 증,▲감 (B-A) | 구분 |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(A) | 2026년도 본 예산(B) | 증,▲감 (B-A) |
| **총액** | 802,257 | 817,528 | 15,271 | **총액** | 802,257 | 817,528 | 15,271 |
| 사업수입 | 154,800 | 216,000 | 61,200 | 사무비 | 485,278 | 523,240 | 37,962 |
| 보조금수입 | 469,630 | 468,788 | ▲842 | 재산조성비 | 36,530 | 17,020 | ▲19,510 |
| 후원금수입 | 720 | 720 | - | 사업비 | 268,288 | 276,268 | 7,980 |
| 전입금수입 | 104,000 | 106,000 | 2,000 | 잡지출 | 500 | 500 | - |
| 전년도이월금 | 51,917 | - | ▲51,917 | 예비비 | 11,661 | 500 | ▲11,161 |
| 잡수입 | 21,190 | 26,020 | 4,830 | | | | |

④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서 전체 총액은 802,257천원, 2026년도 본 예산서 전체 총액은 817,528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5,271천원(약1.9%)증가하였다.

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,

(1) 사업수입 216,000천원, 보조금수입 468,788천원, 후원금수입 720천원, 전입금 수입 106,000천원, 잡수입 26,020천원이다.

(2) 세입 주요 증감 원인은

가) 사업수입 61,200천원(39.5%)증가

- 차기 이월금 미확정에 따른 사업수입 조정으로 인한 사업수입 증가분 반영

나) 보조금 수입 842천원(0.2%)감소
- 종사자 호봉 승급 및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
- 경기도재활프로그램 미확정으로 인한 감소분 반영

다) 전입금 수입 2,000천원(1.9%)증가
- 법인전입금(해피빈 모금/배자구입비) 증가 예상에 따른 상승분 반영

라) 전년도 이월금 51,917천원 감소 : 차기 이월금 미확정으로 인한 이월금 감소분 반영

마) 잡수입 4,830천원(22.8%) 증가
- 사회복무요원 증가 예상에 따른 급식수입 증가분 반영
- 퇴직연금 이자수익 증가 예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증가분 반영
- 부가세 환급금액 증가 예상에 따른 기타잡수입 증가분 반영

⑥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

1) 사무비 523,240천원, 재산조성비 17,020천원, 사업비 276,268천원, 잡지출 500천원, 예비비 500천원이다.

2) 세출 주요 증감 원인은

가) 사무비 37,962천원(7.8%)증가
-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(기본급/제수당/퇴직적립금/사회보험) 증가분 반영
- 보유차량 증가(기존2대→4대)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차량비 증가분 반영
- 사회복무요원 증가 예상에 따른 급식부식 구입비 상승분 반영

나) 재산조성비 19,510천원(53.4%)감소
- 기능보강(차량구입)사업 및 경기복지재단 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분 반영

다) 사업비 7,980천원(3.0%)증가
- 배지구입량 증가 예상에 따른 생산사업비 증가분 반영
-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상승분에 따른 보호작업사업비 증가분 반영

라) 잡지출 변동없음

마) 예비비 11,161천원(95.7%)감소
- 2025년 보조금 반환금 미확정으로 인한 감소분 반영

**제2조(내역)** 세입•세출의 세부명세는 2026년도 본 예산서와 같다.

**제3조(집행)**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보조금등의 사용목적에 부합될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•회계규칙” 제16조(예산의전용) 항목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4조(기타)** 본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•회계규칙”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